

외국인력 고용현황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는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하여,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외국국적 동포 포용정책에 따라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고용허가 전에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외국인력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국내 취업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일반 외국인력에 비해 국내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외국인력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외국국적 동포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외국인력에서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규모를 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의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90-100만원 구간에 집중 분포되어있다. 업종별 취업인원을 보면 일반 외국인력의 경우 제조업, 동포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사업장 변동사유는 약 92%가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로 나타났고, 사업장 변경 신청자의 약 95%가 허용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당연가입 대상이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마련된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향후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I. 외국인력 제도의 소개

우리나라 외국인력은 크게 '전문 외국인력'과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은 복수사증(비자) 허용과 고임금 등 만·관 차원의 다양한 혜택,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수행하지만, 비전문인력은 국내 노동시장 여건,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력을 도입·관리하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몇 차례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를 보완·개선해 왔다.

<표 1>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의 변천과정2)

연 도	제 도
1993. 11	0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2000. 4	0 연수취업제 시행 (연수 2년 + 연수취업 1년)
2002. 4	0 연수취업 기간 확대 (연수 1년 + 연수취업 2년)
2002. 12	0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제 도입(서비스업)
2004. 8	0 고용허가제 도입(동포 취업관리제는 고용허가제 특례제도로 고용허가제에 포함)
2007. 1	0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2007. 3	0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1993년에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업연수를 통해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선진기술을 이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사실상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공급 창구로 활용되었다.3)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임

2) "통계로 보는 노동 20년"(이병희 등, 2008)에서 재인용

3)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인 제도 도입 초기인 1994년초 2만명 수준이었으나 2002년 14만명으로 증가(누계)하였다.

## 외국인력 고용현황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연수생을 사실상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는 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인력선발 과정에서의 송출비리 발생,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sup>4)</sup>, 2007년 산업연수생제 전면 폐지로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였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인력선발 등 송출과정을 담당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이며<sup>5)</sup>,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sup>6)</sup>

2007년 3월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의 특례로서 동포 포용정책에 따라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동포는 방문취업 사증(H-2)을 발급받은 후 국내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등 절차만 거치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으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출입국이 자유롭다.

현재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는 일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와 동포근로자를 도입하는 방문취업제(특례 고용허가제) 두 가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 관련 통계는 출·입국 통계 및 전문인력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에서, 비전문 인력 고용 관련 통계는 노동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고, 정부부처별로 통계의 산출기준 및 범위가 상이해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일된 통계자료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법무부 및 노동부의 통계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외국인력의 추이 및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4)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5) 외국인력 고용 허용업종 및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국내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상황, 업종별 인력수급현황,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에서 결정  
 6)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허용,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허용 한도 결정, 농축산업의 경우 농지면적에 따라 결정 등

## 외국인력 고용현황

### II. 외국인력 체류현황

#### 1. 국내 체류 외국인 110만명, 이중 외국인력 70만명(체류 외국인 중 60%)

2009년 10월말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164,166명이며, 이중 합법체류자가 982,835명, 미등록(불법)체류자가 181,338명(15.6%)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인용)

이 중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전체 외국인의 59.7%인 695,157명이며, 이외에 결혼이민자 등 배우자(F-13, F-21)가 10.0%(115,848명), 유학(D-2)이 5.1%(59,513명), 관광통과(B-2)가 4.5%(51,757명) 이다.

<표 2> 취업자격별 외국인력 현황 (2009. 10.30 기준)

(단위 : 명)

총 외국인 (1,164,166)										
외국인력 (695,157)										기타 <sup>4)</sup> (배우자, 유학 등)
전문 인력 <sup>1)</sup>	비전문(461,642)		미등록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13,284)						
	일반 <sup>2)</sup>	동포 <sup>3)</sup>		단기 취업 (C-4)	연수 취업자 (E-8)	신원 취업 (E-10)	산업 연수 (D-3)	기업투자 연수 (D-8)	취업 관리 (F-1-4)	
38,900	156,757	304,885	181,331	689	130	3,800	1,388	7,276	1	469,009

1) 전문인력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포함  
 2) 일반 : 비전문취업(E-9) 포함(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3) 동포 : 방문취업(H-2) 포함(특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근로자)  
 4) 기타 : 국민의 배우자(F-13, F-21), 유학(D-2), 관광통과(B-2), 영주(F-5) 등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10월호) 재구성

다음으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외국인력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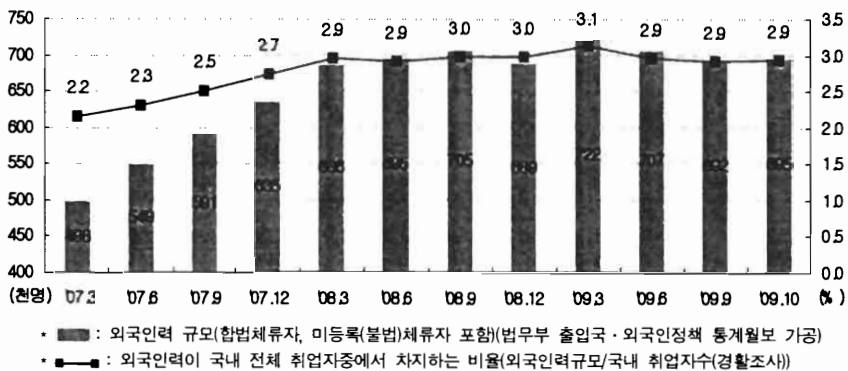
### 2.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후 외국인력 크게 증가, 2009년 10월 현재 국내 취업자의 2.9% 차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2008년 동안 외국인력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2007년 3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시행으로 동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 관련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 규모를 보면 2006년말에는 84천명이었으나, 2007년말 238천명, 2008년말 30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7)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력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70만명 전후에서 머물러 있는데, 2008년 하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도(2009.3월~2010.2월)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도입쿼터를 전년도 1/3 수준인 34천명으로 축소하는 등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력이 국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인력 규모 증가에 따라 2008년초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3월 3.1%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2% 후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 현재 국내 취업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외국인력 규모 및 국내 취업자에서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7) 2006년말은 방문취업제 도입 전으로 방문취업(H-2) 자격 체류 동포가 없었으므로 F-1-4 체류자격 동포만 포함. 2007년 이후는 F-1-4 및 H-2 동포 모두 포함

## 외국인력 고용현황

### 3. 국내 외국인력 695천명 중 비전문(단순기능)인력이 66.4%(461천명)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 중에서 '전문인력(E-1~7)'은 5.6%, '비전문(단순기능)인력(E-9, H-2)'은 66.4%로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비전문인력'임을 알 수 있다.

<표 3> 취업자격별 외국인력 현황 (2009. 10.30일 기준)

외국인력 (695,157, 100%)				
합법 외국인력 (513,826명, 73.9%)				미등록(불법) 체류자
전문인력 <sup>1)</sup>	비전문(461,642명, 66.4%)		단기취업 등	
	일반 <sup>1)</sup>	동포 <sup>2)</sup>		
38,900 (5.6%)	156,757 (22.5%)	304,885 (43.9%)	13,284 (1.9%)	181,331 (26.1%)

1) 전문인력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포함  
 2) 일반 : 비전문취업(E-9), 3) 동포 : 방문취업 동포(H-2)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10월호) 재구성

#### ■ 비전문 외국인력<sup>8)</sup> 중 동포(방문취업자) 비중 60% 이상

외국인력 중 전문인력을 제외한 비전문인력과 '단기취업 등'(이하 '비전문인력 등'으로 통합하여 표기) 인력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전문인력 등'이 전체 외국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3.2%, 2008년 68.2%, 2009년 10월 66.4%로 60%를 상회한다.

'비전문인력 등'을 발급사증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동포가 약 6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E-9)가 32~33%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체류자격 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을 확대한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이 제도로 입국한 동포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비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보고서마다 상이하며, 노동부 내부자료에서는 E-8, E-9, H-2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타 나머지의 비중이 높지 않은 바 본고에서는 외국인력 중 전문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전문인력으로 본다.

## 외국인력 고용현황

<표 4> 비전문외국인력 추이

연 도	합계 (①+②)	비전문 외국인력(①)		단기취업 등(②)					
		일반 (E-9)	동포 (H-2)	단기취업 (C-4)	연수취업 (E-8)	내향선원 (E-10)	산업연수 (D-3)	기업투자 연수(D-8)	취업관리 (F-1-4)
'09. 10	474,926 [66.4]	156,757 (33.0)	304,885 (64.2)	689 (0.1)	130 (0.03)	3,800 (0.8)	1,388 (0.3)	7,276 (1.5)	1 (0.0)
'09. 5	486,453 [68.2]	157,449 (32.4)	315,083 (64.8)	533 (0.1)	341 (0.1)	3,678 (0.8)	1,743 (0.4)	7,622 (1.6)	4 (0.0)
'09. 3	489,995 [67.9]	158,809 (32.4)	316,873 (64.7)	523 (0.1)	421 (0.1)	3,595 (0.7)	2,090 (0.4)	7,679 (1.6)	5 (0.0)
'09. 1	469,655 [68.5]	155,412 (33.1)	299,559 (63.8)	594 (0.1)	594 (0.1)	3,615 (0.8)	2,155 (0.5)	7,716 (1.6)	10 (0.0)
'08.12	469,455 [68.2]	156,429 (33.3)	298,003 (63.5)	590 (0.1)	734 (0.2)	3,641 (0.8)	2,305 (0.5)	7,742 (1.6)	11 (0.0)
'07.12	400,845 [63.2]	134,012 (33.4)	228,448 (57.0)	724 (0.2)	14,684 (3.7)	2,828 (0.7)	6,299 (1.6)	7,328 (1.8)	6,522 (1.6)

1) [ ]는 전체 외국인력 중 비전문인력의 비중  
 2) ( )는 전문인력을 제외한 외국인력(①+②) 중에서 해당 체류자격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내부자료

### ■ '전문 외국인력'의 규모 및 비중 추이

외국인력 중 전문인력은 E-1에서 E-7까지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교수·회화지도자·연구원·기술지도자·전문직업인·예술홍행 종사자·특정활동<sup>9)</s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에서 나타나듯 전체 외국인력 중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전문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5,265명에서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여 1996년 13,420명으로 1만명을 넘은 이후 2009년 10월 현재 38,900명으로 지난 15년간 약 7.4배 증가하였다.<(표 5) 참조>

전문 외국인력의 구성을 보면 회화지도(E-2)가 5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활동(22.8%)과 예술홍행(8.1%) 순으로 비중이 많다. 상대적으로 연구(E-3), 기술지도(E-4)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전문인력 유치에 위한 정책 수립시 이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첨단기술분야 종사자 및 외국인 학교교사 등

## 외국인력 고용현황

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만으로 보면 1998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외국인력이 전체 등록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후 하락하여 2002년 이후에는 4% 초반의 답보 상태를 보인다. 2009년 10월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4.5% 수준이다. 이는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및 2007년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시행 등으로 '비전문인력 등'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장기체류자 중 전문 외국인력 추이

연 도	등록 외국인 전체(명) [A]	전문인력합계(E1~E7), [B]		전문인력 세부분류							
		전년대비 증가율	E/A%	교수 (E-1)	회화 지도 (E-2)	연구 (E-3)	기술 지도 (E-4)	전문 직업 (E-5)	예술 홍행 (E-6)	특정 직업 (E-7)	
											(단위 : 명, %)
2009.10	871,947	<b>38,900</b> ( 10.0)	<b>[4.5]</b>	54	58.5	5.3	0.5	1.3	8.1	20.8	
2008	854,007	<b>35,228</b> ( 12.5)	<b>[4.1]</b>	45	56.8	5.8	0.3	1.5	9.7	22.3	
2007	765,746	<b>31,300</b> ( 14.9)	<b>[4.1]</b>	4.0	56.6	7.3	0.5	1.3	9.6	21.7	
2006	631,219	<b>27,250</b> ( 17.1)	<b>[4.3]</b>	4.2	54.3	7.6	0.6	1.3	11.7	20.3	
2004	468,875	<b>20,306</b> ( -3.7)	<b>[4.3]</b>	4.6	54.5	7.7	0.9	1.4	13.9	16.9	
2002	252,457	<b>21,876</b> ( 18.2)	<b>[8.7]</b>	3.7	49.7	5.3	0.9	1.8	24.2	14.6	
2000	210,249	<b>15,634</b> ( 24.2)	<b>[7.4]</b>	4.4	41.0	4.9	2.2	2.4	25.0	20.1	
1998	147,914	<b>11,143</b> (-24.0)	<b>[7.5]</b>	7.1	44.2	5.3	4.2	3.0	10.2	26.0	
1996	148,731	<b>13,420</b> ( 63.1)	<b>[9.0]</b>	5.9	55.7	4.0	6.8	1.9	7.6	18.1	
1994	84,905	<b>5,265</b> ( 39.8)	<b>[6.2]</b>	9.7	42.6	2.4	7.5	2.8	10.7	24.4	

1) 등록외국인 : 전체 체류 외국인력 중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단기 체류외국인 등 제외)  
 2)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3) [ ]는 전체 등록외국인 중 전문기술 인력의 비중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련 통계연보(1993-2003), 각 년도에서 재구성.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내부자료(2004-2008)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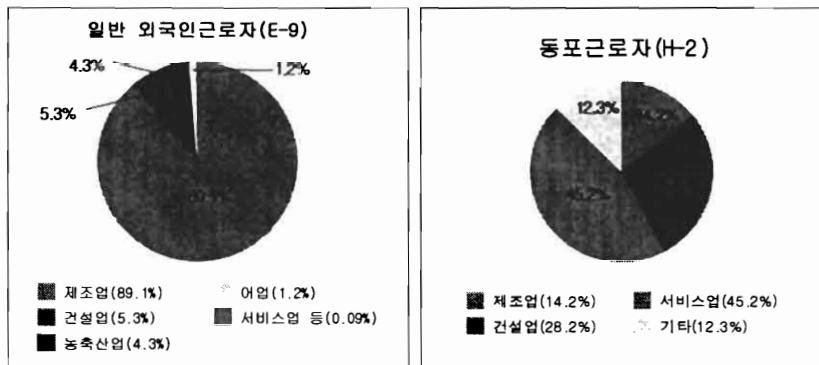
Ⅲ. 외국인력 고용실태<sup>10)</sup>

1. 외국인력 취업 업종 : 전문인력은 교육서비스업, 비전문인력 중 일반 외국인(E-9)은 제조업, 동포(H-2)는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

외국인력의 취업 업종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58.5%가 회화지도(E-2), 5.4%가 교수(E-1) 자격으로 60% 이상이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자료상에서도 외국인력의 10.7%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의 대다수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비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 상황 및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취업 허용업종을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일부)·농축산업·어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sup>11)</sup> [그림 2]를 보면, 일반 외국인력의 경우 약 89%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동포는 음식점·가사도우미·간병 등 서비스업이 45.2%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8.2%, 제조업 1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비전문 외국인력의 업종별 분포



- 일반 외국인(E-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인용
- 동포의 경우 동포 991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이진영, 2008)
- 동포 서비스업(45.2%)의 경우 음식점업 27.4%, 가사도우미 10.2%, 간병도우미 등 4.8%, 숙박업 2.8%임

10)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노동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상 정보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사용. 동포의 경우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이진영, 2008)' 자료 활용

11)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에게는 재생활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일부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허용. 동포에게는 음식점업, 숙박업, 가구 내 고용활동, 간병인, 가정용품 도매업 등 서비스업내 세부 업종에 대해 취업 허용

2. 외국인 고용 사업체규모 : 일반 외국인력의 66%, 동포근로자의 87%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

비전문 외국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를 보면 일반 외국인력(E-9)의 경우 66.1%가, 동포(H-2)의 경우 87.0%가 30인 미만 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주로 소규모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외국인력의 경우 10~29인 사업체에 고용된 비중이 가장 높고, 동포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외국인력에 비해 동포근로자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일반 외국인이 주로 제조업에, 동포근로자는 소규모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표 6>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구분	(단위 : %)						
	4인 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일반 외국인근로자(E-9)	19.7	14.3	32.1	13.6	11.4	8.0	0.8
동포근로자(H-2)	39.2	30.8	17.0	3.6	4.2	26	2.6

- 1) 일반 외국인(E-9) :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추출 (2009. 11.20일 취업중인 근로자 기준)
- 2) 동포 근로자(H-2) :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이진영, 2008) 인용

3. 취업기간 : 2009년 12월 10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취업 가능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인력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야하며, 연속하여 최장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이에 기간을 만료한 외국인력은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해야만 재고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2009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sup>13)</sup>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류기간(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3년이 만료된 외국인력을 재고용할 경우 출국할 필요 없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최대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

12)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체 규모별 취업현황은 관련 통계가 없어 생략

13) 2009년 10월 9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고용 조항(제18조) 및 사업장 변경 조항(제25조)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되고, 나머지 조항은 2010년 4월 10일 시행됨.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비전문 외국인력 중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처음 입국한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폭행, 사업장 휴·폐업,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해고 등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회까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금년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10일부터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휴·폐업 및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에는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단, 동포근로자(H-2)의 경우는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없으며, 사업장 변경 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만 하면 된다.

<표 7>은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일반 외국인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신청자 추이를 나타낸다. 법률상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2007년 33천건, 2008년은 60천건으로 실제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업장 변경 신청자 수를 보면 2007년에서 2009.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력 체류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 및 체류 외국인력들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확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12월 외국인고용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장 변경 신청자수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때문으로, “휴·폐업·도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5~7%)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유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휴·폐업·도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의 비중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7>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 신청자 수(변경 사유별)<sup>1)</sup>

(단위 : 명)

구분	사업장 변경 신청자 수	①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제25조1항1호)	②휴업/폐업/도산 등 (제2호)	③노동관계법 위반 등 (제3호)	④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제4호)
		07년	3월 2,200	2,096	93
	6월 3,081	2,842	158	13	68
	9월 2,887	2,687	153	10	37
	12월 3,092	2,876	146	8	62
	<b>07년 합계 33,201 (100%)</b>	<b>31,011 (93.4%)</b>	<b>1,629 (4.9%)</b>	<b>105 (0.3%)</b>	<b>456 (1.4%)</b>
08년	3월 4,201	3,911	247	7	36
	6월 4,811	4,542	209	19	41
	9월 5,527	5,052	424	13	38
	12월 6,747	5,948	673	7	119
	<b>08년 합계 60,545 (100%)</b>	<b>55,688 (92.0%)</b>	<b>4,078 (6.7%)</b>	<b>125 (0.2%)</b>	<b>654 (1.1%)</b>
09년	03월 6,181	5,575	548	7	51
	06월 6,735	6,294	369	12	60
	09월 6,345	5,961	339	6	39
	10월 6,033	5,540	460	3	30
	<b>09년 10월 합계 59,357 (100%)</b>	<b>54,378 (91.6%)</b>	<b>4,455 (7.5%)</b>	<b>65 (0.1%)</b>	<b>459 (0.8%)</b>

1)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추출 (2009. 11. 24일 자료 추출)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력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한다. <표 8>을 보면 90% 이상이 허용된 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비율은 2008년 12월 다소 낮아진 이후 2009년에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2009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축소 및 휴·폐업 등으로 실직한 외국인력에 대한 집중 취업알선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8> 사업장 변경 신청자 중 허용 기간내(2개월) 사업장 변경율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9월까지)			
	3월	6월	9월	12월	합계	3월	6월	9월	12월	합계	3월	6월	9월	합계
허용기간내 사업장 변경율	95.3	94.2	94.0	92.4	94.4	93.7	93.9	94.3	90.5	93.4	95.3	95.6	96.5	95.3

1)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추출 (2009. 11. 24일 자료 추출)  
2) 사업장 변경 허용기간이 2개월이므로 “10월”은 허용기가 내에 있어 제외

14)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변경 사유가 1가지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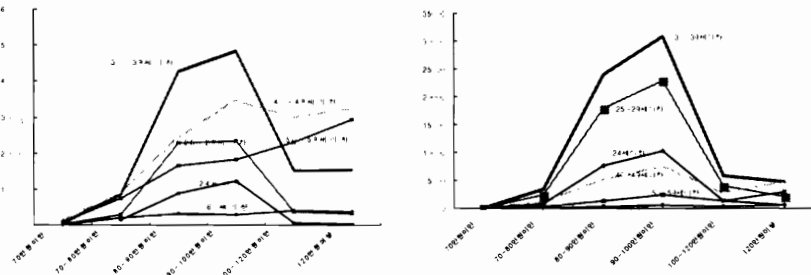
5. 임금수준 : 여성은 서비스업에서 120만원이상, 남성은 제조업에서 90-100만원 구간에 주로 분포

임금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것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시 양 당사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이며, 동포근로자(H-2)의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많은 경우가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인력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남녀 연령별 임금은 [그림 3~4]와 같다. 남녀 모두 100만원미만까지는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100만원이상 구간에서는 취업자수가 크게 하락한다. 전 연령층에서 80-100만원 미만 구간에 취업자수가 밀집되어 있으며, 남녀 모두 90-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의 비중이 높아 비전문외국인력의 경우 거의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놓여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에 있어서 40세를 기준으로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40세 미만은 100만원까지 임금상승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100만원 이상이 되면 취업자가 급감하는데 비해, 40대는 100-120만원미만 구간에서 취업자가 소폭 감소한 뒤 120만원이상 구간에서는 취업자수가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대는 임금상승에 따라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120만원이상 구간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남녀 모두 비슷하나 여성이 남성이 비해 더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3] 비전문인력 임금수준별 취업자수(여) [그림 4] 비전문인력 임금수준별 취업자수(남)



1) 2009. 9. 24일 추출일자 기준.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의한 특성이기보다는 외국인력 취업자격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비전문인력은 40세 미만에, 특례를 통한 동포근로자는 4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비전문인력에 비해 동포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에 분포되어 있다.(이하 <표 10> 참조) 또한, 동포근로자는 여성의 비중이 일반 비전문인력에 비해 높아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0대 이상의 임금 상승현상이 여성의 경우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표 9> 비전문인력의 취업자격별 성, 연령 비중

	일반 비전문인력		동포	
	남	여	남	여
계	90.9%	9.1%	63.5%	36.5%
40세 미만	95.3%	95.9%	26.3%	34.5%
40세 이상	4.7%	4.7%	73.7%	65.4%

<표 10>을 보면 전체 임금분포는 90~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1.0%로 가장 높으며, 80~90만원 미만(31.8%), 120만원이상(11.0%)의 순이다. 80만원 미만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혹은 그 이하) 지급받고 있다기보다 수습기간 적용(3개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 자료는 초과근무수당,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은 <표 10>의 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00만원이상을 받는 비중이 높게(여성 35.5%, 남성 18.0%) 나타나는데 이는 산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서비스업(특례)은 100만원이상이 해당 업종 종사자의 50%를 상회하여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조업은 100만원 미만이 약 90%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밀집되어 있다. 서비스업(특례)은 남성의 4%, 여성의 55%가 종사하며, 임금이 낮은 제조업은 남성의 84%, 여성의 4%가 종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 외국인력 고용현황

<표 10> 업종-임금구간별 고용허가제 취업자수

(단위: %, 명)

	70만원 미만	70-80만원미만	80-90만원미만	90-100만원미만	100-120만원미만	120만원 이상	합계
전체	530 (0.3)	11,159 (5.2)	68,229 (31.8)	87,830 (41.0)	23,015 (10.7)	23,474 (11.0)	214,237
여성	건설업	0.0	1.7	3.8	9.4	5.9	79.0 (286)
	농축산업	0.0	1.0	19.9	68.9	8.7	1.5 (2,190)
	서비스업(특례)	1.0	7.3	14.9	20.4	26.2	30.2 (24,852)
	어업	2.1	0.0	2.1	38.3	48.9	8.5 (47)
	제조업	0.2	6.9	43.2	41.4	4.9	3.5 (17,672)
합계	289 (0.6)	3,054 (6.8)	11,767 (26.1)	13,949 (31.0)	7,610 (16.9)	8,378 (18.6)	100.0 (45,047)
남성	건설업	0.1	4.6	24.6	36.2	2.7	31.8 (13,527)
	농축산업	0.1	0.9	14.8	48.8	25.1	10.3 (5,689)
	서비스업(특례)	0.0	2.7	16.9	23.1	23.8	33.4 (5,751)
	어업	0.1	0.1	16.0	49.6	23.4	10.9 (1,453)
	제조업	0.1	4.9	35.9	45.0	8.4	5.7 (142,489)
합계	241 (0.1)	8,105 (4.8)	56,462 (33.4)	73,881 (43.7)	15,405 (9.1)	15,096 (8.9)	100.0 (169,190)

1) 2009년 9월 24일 추출일자 기준(분류불능 제외).

2) 남성 서비스업(일반)의 임국자는(05-09년 누계) 약 200여명(임국자 중 0.2%)으로 통계적 의미를 갖기는 어려움.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

### 6. 노동보호 제도 : 산재보험수급자 중 외국인력의 비중은 28~3.0%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고용과 함께 국민연금(상호주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된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현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바, 현재 외국인 고용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외국인력에게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며, ‘임금채불보증보험’은 임금채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상시고용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채불에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가입토록 한 보험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력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는 출국시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과, 사망·질병에 대비한 ‘상해보험’이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의 보험 가입률은 2009.9월말 출국만기보험이 90.5%로 가장 높고, 임금채불 보증보험(79.0%), 상해보험(64.4%), 귀국비용보험(56.2%) 순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고용보험의 2009년 9월말 가입건수는 93,569건(누계)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의 15.5%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외국인력 고용현황

### V. 시사점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방문취업(H-2)을 통한 동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문인력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인력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점이 외국인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효과와 외국인력의 인권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업종별로 내국인일자리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인력의 도입으로 내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노동시장이 통합화되는 추세에서 외국인 노동력유입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규모 추이와 노동시장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외국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노동시장,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자료 >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도
- 윤정향, 2009, 「외국인력 수요분석 및 활용방안」, 한국고용정보원 발간예정.
- 이병희 외, 2008, 「통계로 본 노동 20년」,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노동통계 홈페이지 (<http://laborstat.molab.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사무관(02-2110-7192)  
고용정책과 최윤미 사무관, 강은영 전문위원 (02-2110-7166, 7167)  
한국고용정보원 윤정향 부연구위원(02-2629-7352)